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 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대 및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과징금 상한을 평균 납품대금으로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
징금 가중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안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중 “2)”를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0”을 “10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평균 납품대금(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납품대금으로서 해당 대규모유통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입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입액을 연평균 매입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입액을 연매입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임대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임대료로서 매장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에서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3)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균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범위에서 관련 납품대금(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한 전체 상품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임대료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평균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위반금액 및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 기준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 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 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 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 대성의 정도별로 2)의 기준에 따 라 산정한다. 2) <u>관련 납품대금(법 제35조제1항</u> <u>본문에 따른 납품대금으로서 대</u> <u>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u> <u>된 상품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u> <u>는 금액을 말한다)</u> 또는 관련 임 대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 른 연간 임대료로서 매장임차인 이 위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 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별표 1]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 -- 1) ----- ----- ----- ----- ----- ----- 2) 및 3)----- ----- 2) <u>평균 납품대금(법 제35조제1항</u> <u>본문에 따른 납품대금으로서 해</u> <u>당 대규모유통업자의 직전 3개</u> <u>사업연도 연평균 매입액을 말한</u> <u>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u> <u>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u> <u>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u> <u>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입</u> <u>액을 연평균 매입액으로 환산한</u>

련 임대료의 범위에서 관련 납품
대금(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기
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한 전체 상
품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
련 임대료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
정한다. 다만, 평균 납품대금 또
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
하거나, 위반금액 및 관련 납품
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없
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
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
 정·조사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
 중할 수 있고, 감경의 경우 산정

나. -----

100의 -----

기준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생략) 2. 개별기준 가.~바. (생략) 사.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81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설>	-----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현행과 같음) 2. ----- 가.~바. (현행과 같음) 사. ----- ----- ----- 제2항 및 제3항에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961